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2. 3.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호
----------	-----

제출연월일 : 2020. 2. 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1996년) 당시의 목적과 기능 쇠퇴로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기금 일반회계 전출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9.11.14. ~ 2019.12.04.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6) 충청남도소관부서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 폐지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 채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마을자치분권과장	이 종 유
	마 을 자 치 팀 장	양 미 호
	담 당 자	조 재 호 (746-5244)

[1996. 3. 1 조례 제43호]

개정(1999. 10. 11. 조례 제229호)

개정(2002. 5. 10. 조례 제361호)

(일부개정) 2004.05.29 조례 제434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245호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미 조성한 기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등 기타수입

제3조(용자대상)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금용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장은 제1항의 용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가구 선정 및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용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04.5.29>

제6조(용자금 대부신청) ①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조례 361호)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용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②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 되는 즉시 신청인에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2년에 걸쳐 년1회씩 균분상환한다.

제9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용자금의 상환이 곤란 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11>
-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용자기간에 걸쳐 년1회씩 징수한다.<개정 99. 10. 11>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에 의거 연장승인을 받은 용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자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용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용자의 금지) 용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재용자 할 수 없다.

제16조(용자금의 반환) 시장은 용자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99. 10. 11)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용자 목적외에 사용 하였을 때
 4. 용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7조(용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34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부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의 융자금중 상환하여야 할 나머지 융자금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상환기간이 지나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